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과 장 구영민	042-481-5213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정수환	042-481-5179
 2020년 1월 14일(화)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침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 특허청,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19.7.9.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 (www.prism.go.kr)

이번 가이드에는 ▲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우리과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붙임 :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가이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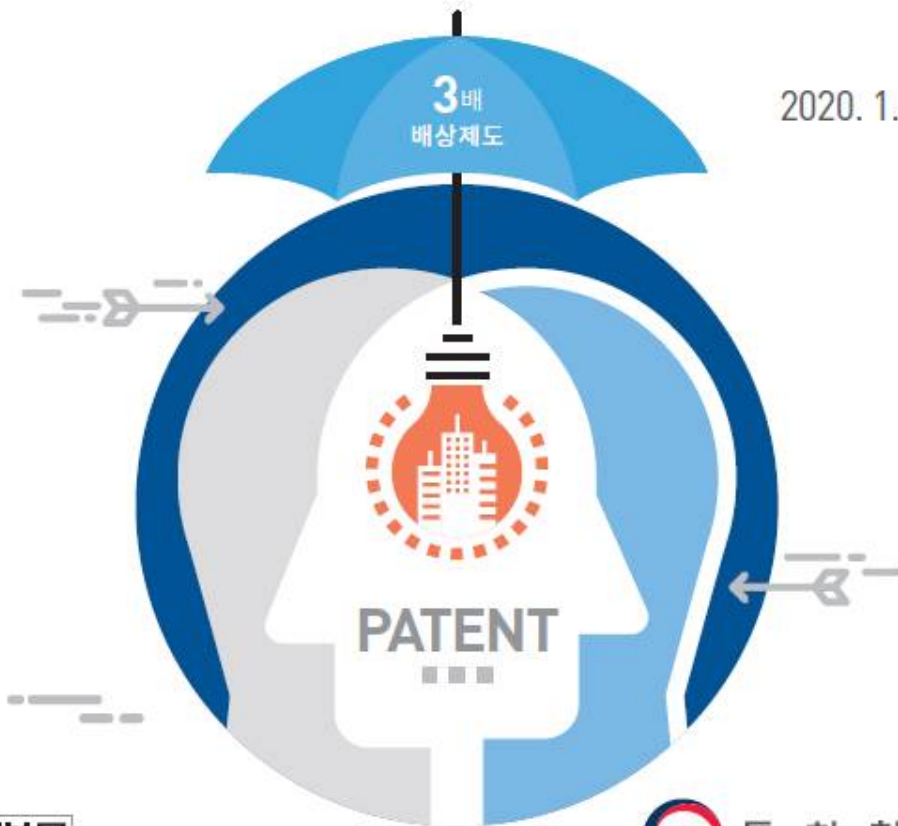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정수환(☎ 042-481-5179)에게 연락 바랍니다.
--	--

[붙임]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가이드' 표지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726-01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0. 1.



 **특 허 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